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38
----------	-------

발의연월일 : 2015. 11. 20.

발 의 자 : 정미경 · 조명철 · 홍철호
이완영 · 박성호 · 류지영
주영순 · 신경림 · 이주영
유승우 · 강석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가, 허가, 신고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써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임.

이에 현행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의제요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할”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 -----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 ----- ----- ----- ----- ----- ----- ----- ----- ----- ----- ----- ----- ----- -----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u>사업계획승인</u> 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u>변경승인</u> -----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u>승인</u> 하려는	③ ----- -----승인 또는

